

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

2015. 9. 7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○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15년 9월 2일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: 2015년 9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5. 9. 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 : 복지교육국장 구 본 수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

나. 제출내역

○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3. 주요내용

○ 변경사유

- 시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보상금 편성 수정

-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(전년대비 20%증가, 1,334톤/월 → 1,600톤/월)

및 재활용 정거장 배출 물량 증가에 따른 운반비 등 처리비용 증액 편성

(단위: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 (변경)	증 감	항 목	기정액	지출액 (변경)	증 감
합 계	1,616,886	1,825,186	208,300	합 계	1,616,886	1,825,186	208,300
보조금	202,000	410,300	208,300	비용자성 사업비	1,035,650	1,774,373	738,723
예탁금 원금회수	750,000	750,000	0				
예치금회수	398,356	398,356	0	예치금	581,236	50,813	△530,423
이자수입	41,621	41,621	0				
기타수입	224,909	224,909	0				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송인수)

-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관할 지역 내에서 마포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기금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조성되며,
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,
- 시·도 보조금이 추가 교부(208,300천원:전액시비)되어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보상금을 수정 편성하였으며,
-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 (전년대비 20%증가 : 1,334톤/월 → 1,600톤/월) 및 재활용정거장 배출 물량 증가로 수집운반비 등 처리비용을 증액 편성하였고
- 수집운반 비용의 일반회계 지출 부담이 과중되어, 수집운반비 지급방식 변경 (일반회계 → 기금)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으로,
-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운용 목적에는 부합이 되나, 다만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수집운반 비용이 과중되고 있어,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업무 및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활용 수거율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로 수집운반비 절감 및 안정적인 수거 처리 체계 구축 등 기금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